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8년 8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미식품지주 주식회사, 주식회사 풍림피앤피지주와의 각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07월 18일

주식회사 오뚜기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(평촌동)

대표이사 이 강 훈

명의개서대리인

주식회사 KB국민은행장 허 인